



기본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조항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1조	보호구의 제한적 사용
제32조	보호구의 지급 등
제33조	보호구의 관리
제34조	전용 보호구 등

※ 상기 조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조항이 있음을 유념한다.



☑ 일터에서 적용하여야 할 유해·위험 예방 조치

☑ 보호구란?

-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해 외부의 유해·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로써 안전모, 안전화, 보안경, 안전장갑 그리고 안전대 등이 있다.

☑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

-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·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 조치 실시
- 상기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



☑ Check Box | 보호구의 선택 시 고려사항

- 1 가스, 분진, 화학물질, 소음, 유해광선, 정전기, 고압전기, 산소 결핍, 고열 등의 유무를 조사하여 해당 유해·위험 요소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
- 2 유해·위험요소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
- 3 올바른 보호구 선택을 위해서는 보호구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파악
- 4 사용 장소의 작업환경에 따라 보호범위를 설정

신체와 위험요소



☑ 보호구의 지급 등

-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
-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 철저

보호구	보호구	작업명
안전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
안전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높이, 깊이 2미터 이상의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
안전화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떨어지는 물체에 맞거나 물체에 끼이거나 감전, 정전기 대전 위험이 있는 작업
보안경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
보안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
절연용 보호구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• 노출 충전부가 있는 맨홀, 지하실 등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•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•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•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, 기계장치의 운전·조작작업
방열복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열에 의한 화상이나 열피로 위험이 있는 작업 •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하거나 매우 더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

보호구	작업명
방진마스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선창 등의 하역작업
방한모 · 방한복 방한화 · 방한장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의 하역작업 •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추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

☑ 보호구의 관리

-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, 청결을 유지(단,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, 안전모, 보안경의 경우에는 예외)
-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둬

| 보호구 관리 예시



- 비치현황 : 팀별
- 점 검 자 : 각 팀 담당자
- 점검주기 : 1회 / 월
- 점검항목 : 수량, 상태점검
- 결과조치 : 정리정돈, 청결, 교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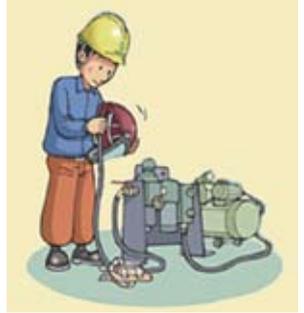
| 방진마스크 필터 교체 주기 예시



- 계속 사용 시 : 30분마다 교체
 - ※ 제작사가 정한 기준이 있을시 이에 따름
- 밀봉된 포장 개봉 시 : 6개월
- 포장 미개봉 시 : 제작사가 정한 유효기간
 - ※ 유효기간 없는 경우 : 5년

☑ 보호구별 사용방법 및 관리

보호구	사용방법 및 관리
안전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착용체 조절나사로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게 착용한다. • 착용한 다음 턱끈을 조여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. • 착용 중에 모체가 충격을 받거나 변형되면 폐기한다. • 모체를 유기용제 등으로 닦거나 세척하지 않는다. • 턱끈 등 착용체는 변형, 인증되지 않은 부품으로 교체하지 않는다.

보호구	작업명
<p>안전화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전화는 감전 위험 장소에서 착용하지 않는다. • 안전화는 훼손, 변형하지 않는다. 특히 뒤축을 꺾어 신지 않는다. • 절연화, 절연장화는 구멍이나 찢김이 있으면 즉시 폐기한다. • 내부가 항상 건조하도록 관리한다. • 가죽제 안전화는 물에 젖지 않도록 한다. • 안전화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으면 물에 씻어 말린다.
<p>안전장갑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용 전에 구멍이나 찢김이 확인되면 즉시 폐기한다. • 내전압용 안전장갑은 항상 건조한 상태로 사용한다. • 내전압용 절연장갑은 기계, 화학, 열에 손상되거나 물리적 이상을 보이면 즉시 폐기한다. • 내전압용 절연장갑은 제품에 표시된 최대 사용전압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. • 내전압용 절연장갑은 유류, 휘발용제, 산·알칼리 등에 매우 약하므로 절대로 접촉하지 않는다.
<p>방진 마스크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용 전에 흡·배기 밸브의 기능과 공기 누설 여부를 점검한다. • 필터를 수시로 확인해 습하거나 흡·배기 저항이 크면 교체한다. • 흡·배기 밸브를 청결하게 유지한다. • 면체는 중성세제로 흐르는 물에 씻어 그늘에서 말린다. • 면체는 기름이나 유기용제, 직사광선을 피한다. • 사용 전에 점검·장착·사용법을 교육·훈련한다. • 면체 접안부에 손수건 등을 덧대 사용하지 않는다.
<p>방독 마스크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작업내용에 적합해야 한다. • 산소 농도 18% 미만, 유해가스 농도 2%(암모니아 3%) 이상인 장소 이거나 장시간 작업할 때는 송기마스크를 사용한다. •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파과시간이 지나면 즉시 교체한다. • 밀봉된 상태로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. • 면체, 배기밸브 등은 방진마스크 사용·관리법을 따른다.
<p>전동식 호흡 보호구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용 전에 배터리 충전과 펌프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. • 산소 결핍 위험지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. • 방진·방독마스크의 사용과 관리기준을 따른다.
<p>송기 마스크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과장치로 기름, 분진, 유해물질을 걸러 신선한 공기를 공급한다. • 공급 공기의 압력은 1.75kg/cm² 이하가 좋으며,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때는 압력을 조절한다. • 실린더 내 공기 잔량을 점검해 알맞게 대처한다. • 수동 송풍기형은 장시간 작업할 때 2명 이상이 교대한다. • 작업 전에 도구 점검, 착용법 지도, 착용 상태 확인을 한다. • 작업 전에 산소 농도를 측정한다.

보호구	작업명
<p>안전대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대 걸이(부착 설비 등)를 설치한다. • 안전대 설치 구조물은 벨트보다 조금 높은 곳에 두도록 한다. • 로프는 되도록 2m 이내로 짧게 사용한다. • 로프가 마모되거나 금속제가 변형되지 않았는지 살핀다. • 지지 로프를 2명 이상이 사용하지 않는다. • 작업 시작 전에 안전대 및 부속설비를 점검한다. • 안전대의 짐줄은 예리한 구조물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.
<p>보안경 및 보안면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작업에 맞는 보안경인지 확인한다. • 안전인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한다. • 사용 중 렌즈에 흙, 더러움, 깨짐이 발견되면 교체한다. • 착용 시 거리감이 불량하거나 이물감 등이 느껴지면 교체한다. • 청결히 보관하고 사용한다.
<p>방음 보호구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용설명서에서 안전인증과 차음 성능을 확인한다. • 귀마개가 자신의 귀에 맞는지 확인한다. • 귀마개는 반대쪽 손으로 귀를 잡고 위로 당기며 압축해 밀어넣는다. • 귀마개는 귀 내부로 충분히 들어가게 착용한다. • 귀덮개가 귀보다 커서 귀를 짓누르지 않는지 살핀다. • 귀마개는 오염되거나 더러워지면 교체한다.

전용 보호구 등

- 보호구를 공동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실시

| 보호구 지급 기준 예시 : 「○○케미칼」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급기준의 예

순	품명	지급기준	지급대상	비고
1	안전모	1년	전 직원	개인지급
2	안전화	현장 : 6개월 / 사무실 : 1년	전 직원	개인지급
3	방진마스크	10 일	분진발생 작업	개인지급
4	용접흡마스크	1 개월	용접작업 시	개인지급
5	귀마개	5 일	전 직원	개인지급
6	보안경(무색)	6 개월	그라인더 작업 시	개인지급
7	보안경(차광)	6 개월	산소절단 작업 시	개인지급
8	보안경(고글)	필요시	전 직원	개인지급
9	방독마스크	1년(계속 사용 시)	Gas 발생지역 작업 시	공용지급
10	방독방진마스크 (필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속 사용 시 : 30분마다 교체하거나, 작업지역 농도에 따라, 제작사가 정한 바에 따라 교체사용한다. • 밀봉된 포장 개봉 시 : 6개월 • 포장 미 개봉 시 : 제작사가 정한 유효기간(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5년으로 한다) 	Gas / 분진 발생 지역 작업 시	공용지급
11	보안면	6 개월	그라인더 작업 시	개인/공용지급
12	절연장갑(전기용)	필요시	전기작업 시	공용지급
13	안전벨트	필요시 대여	고소작업 시	공용지급(대여)

「필터에서의 유해·위험 예방 조치」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조항에서 해당 유해·위험 예방 조치 내용을 사진, 삽화 등을 통해 현장에서 좀 더 적용하기 쉽도록 구성한 것으로,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, 위험성평가, 교육 등에 활용하길 바랍니다.